

필요의 원리, 응분의 원리, 시민권의 원리,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이 건 민

1. 기본소득(의 원리, 정책범주, 성격)은 과연 무엇인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최근 들어 기본소득 찬성/반대 진영의 상호토론이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¹⁾에서 필자는 기본소득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부 부당한 비판논리를 접하면서 답답함을 넘어서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다. ‘기본소득은 부의 소득세와 유사하며, 부의 소득세는 신자유주의를 주창한 대표주자 중 한 사람인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것이므로,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도, 소득보장제도도, 사회(복지)정책도 아니다.’ ‘지급액이 생계수준에 미달하는 부분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 PBI)에서 출발하여 지급액이 생계영위에 충분한 완전기본소득(Full Basic Income; FBI)으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전)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회보험의 해체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초래한다.’ ‘기본소득은 노동유인(work incentive)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노동력의 재상품화(recommodification)를 촉진하는 일종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본소득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등등. 마지막 두 문장에서도 발견되듯,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비판들 역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예를 들어, 김은표(2016)를 보라).

이 글에서는 우선 위에서 열거한 비판들 중, 사회복지의 할당원리(principle of allocation)를 들어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는 김병인(2016)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²⁾ 다음으로 인구학적 범주에 입각하여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demogrant)을 (부분)기본소득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청년기본소득 제안이 등장한 사회경제구조를 제시하며 반비판한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안이 제출된 주요 배경인 한국 청년들이 마주한 엄혹한 현실, 즉 비자발적·구조적 실업, 노동빈곤, 불안정·비정규 청년노동시장(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사회수당이 등장했던 사회경제적 맥락과 우리의 현재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금민, 2017)을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역설한다.

이어서 지금까지 노동능력이 충분하며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졌던 ‘청년’층이 이제 복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유급

1) 노동유인과 효율성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면서 현존 사회복지의 전면적 해체와 기본소득으로의 일원화를 피하는 ‘우파형 기본소득’에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만약 ‘우파형 기본소득’에서의 기본소득 지급액이 생계수준에 (매우) 불충분한 수준이라면, 완강히 저항할 것이다.

2) 사실 내가 이해하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노동정책, 부동산정책, 재분배정책(소득재분배, 자산재분배, 기회와 권력의 재분배, 노동·여가·돌봄 시간의 재분배 등)일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이자 동시에 사회(복지)정책이기도 하다. 아울러 참여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사회 제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전략(금민, 2016; Van der Veen and Van Parijs, 1986)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우리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점을 기본소득의 ‘단점’이 아니라 ‘가장 큰 장점’으로 이해한다.

노동'(paid work)을 중심으로 한 '필요의 원리'와 '응분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구성을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진정한' '시민권의 원리'에 기초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사회적 시민권'의 재구성과 급진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부분기본소득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의 확장, 즉 '보편성 상승'으로의 잠재력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만약 우리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단박 도약이 아니라 부분기본소득의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의 점진적 확장이라는 전략을 선택할 경우, 부분기본소득의 '보편성 확대 전략'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청년기본소득'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끝으로 청년기본소득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귀중한 실천인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운동'과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 운동'에 주목할 것을 환기하면서 글을 맺는다.

2. 기본소득은 필요의 원리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사회정책이 아니다?

김병인(2016)은 사회부조, 사회보험 등 전통적인 소득보장제도가 인간의 필요(needs)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반면, 기본소득은 인간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결코 사회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반비판에 앞서, 기본소득에 대한 그의 성격 규정이 타당한지부터 따진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인간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사회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김병인의 비판은 기본소득에 관한 그의 몰이해·편견, 부당전제 및 이분법의 오류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병인이 파악한 기본소득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개인주의적 정책에 가까우며 반집합주의적(anti-collectivism)이다. ②사회정책이 아니라 조세정책에, 필요에 따른 재분배가 아니라 부의 재분배 정책에 가깝다. ③노동유인을 제고하며 임금보조정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노동력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가 아니라 재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다. ④소득보장체계의 해체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초래할 위험이 다분하다. ⑤기본소득은 노동시장정책의 개혁을 방기한다.

기본소득의 성격에 대한 김병인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되었다. 첫째, 그는 그릇된 이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범주의 함정'과 '부당전제의 오류'에 빠져 있다. 집합주의에 토대한 정책은 바람직하고, 개인주의에 입각한 정책은 반복지적인가? 가구 중심으로 지급되는 현재의 복지급여체제에서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제고할 수 있는 개인 단위의 지급이 추가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또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모든 현금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도래와는 무관하게, 집합적으로 조직된 소득보장제도가 갖는 내재적, 근본적 한계, 즉 기준선, 규정, 규칙 설정으로 인한 사각지대(배제)의 발생('제1종 오류')과 부정수급 문제('제2종 오류'), 관료주의의 폐해는 엄연히 존재해왔던 것 아닌가?³⁾ 만약 향후에 기본소득제도가 중앙정부 내지 지방정부 차원(더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마련될 경우 그 역시 특정 정치공동체 내에서 '집합적으로 조직된'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없는가?⁴⁾

3) 기존 소득보장제도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객관적으로 지적한 것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도 아니고, 부정수급자 개개인을 비난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음을 밝힌다.

4) 김병인(2016)과는 달리, 사회(복지)정책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의 소득보장제도(소득보장정책)로

둘째, 기본소득이 현존 소득보장제도의 해체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거의)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예산계약선 고정 패러다임’에 갇힌 것, 또는 전통적인 소득보장제도를 방어, 옹호하고자 하는 태도의 발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유급노동 중심성과 ‘예산계약선 고정 패러다임’을 넘어선다면, 우리는 기본소득 도입, 사회서비스 및 공공인프라의 확충, (최저)임금의 인상, 각종 노동·사회 입법 및 보호조치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정책패키지로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셋째, 기본소득 도입이 (최저)임금 인하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종의 ‘부당전제’일 뿐이며, 이는 기본소득을 단지 ‘임금보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는 그의 견해에서 쉽게 확인된다. 기본소득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이 정책패키지로 함께 추진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그의 사고 속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다수의 사람들이 꺼리는 형편없는 일자리(lousy job)에서의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비롯한 노동조건 전반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높일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넷째, 그는 제도 간 공통점을 무리하게 연결 지으면서, 구체적 차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는 엄연히 차이난다.⁵⁾ 부의 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역시 뚜렷이 다르다.⁶⁾ 기본소득과 근로장려세제 간 차이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김병인은 이 셋의 유사성에만 주목할 뿐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고/못하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부의 소득세 아이디어는 그가 강력히 비판하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제도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저자가 옹호하는 사회부조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갖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보장제도의 전체 지형에서,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사회부조가 최소소득보장제도(Guaranteed Minimum Income; 이하 GMI)⁷⁾이라는 큰 우산 하에서 서로 경합하는 제도임을 전혀 보지 않고/못하고 있는 것은 또 어떠한가? 스핀햄랜드제도와 기본소득의 운영원리가 상이함을 아예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은 또한 어떠한가?⁸⁾ 영국의 노동자가족소득보전세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에서 발생했던 고용주의 도덕적 해이가 전 사회성원이 받는 기본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리라고 유비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다섯째, 노동유인 제고와 노동력의 탈상품화/재상품화에 대한 거칠고도 일면적인 논의이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회부조가 높은 한계암묵세율, 빈곤의 텃과 실업의 텃, 낙인효과 등 여러 문제를 노정한다는 점은 엄연한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이다. 신고전파 경제학, 경제적 인간

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지지·찬성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해 유보적·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학자들 역시 그러하다(예컨대, 김영순(2017a; 2017b)을 보라).

- 5) 이에 대해서는 Van Parijs(1995)가 잘 지적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사전(*ex ante*) 지급인 반면 부의 소득세는 사후(*ex post*) 지급인데, 이는 시차(time lag)와 예산(신용)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중요한 차이를 낳는다. 심리적 효과와 권리 인식 면에서 양 제도가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며, 소득조사 부담과 행정 비용 측면에서도 양자 간 격차가 존재한다.
- 6) 부의 소득세가 유급노동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반면, 근로장려세제는 저임금노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 7) 모든 사회 성원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 8) 스핀햄랜드제도는 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받게 될 경우 생계비와 임금 사이의 차액(‘생계비-임금’)을 전부 보조한다는 점에서 한계암묵세율이 100%인 최소소득보장제도와 할 수 있다. 즉 생계비 미만의 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증가(감소)하게 되면 보조금은 정확히 증가(감소)한 임금의 크기만큼 감소(증가)하게 된다. ‘한계암묵세율 100%’라는 스핀햄랜드제도가 지닌 고유한 특성은 칼 플라니(2009)로 하여금 노동동기의 급감으로 인한 인간성의 타락과 제도 자체의 지속불가능성 면에서 이 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80~100%에 이르는 한계암묵세율로 인해 빈곤의 텃, 실업의 텃을 양산하고 있는 사회부조와 유사한 것이지, 특정 시점에서 임금수준과는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성격과는 판이하다.

(*homo economicus*) 등을 운운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복지축소의 옹호 논리와 특정 제도의 내재적, 구조적 한계 지적을 엄밀히 구분하지 못하고 곧바로 등치시키는 것 역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저소득층의 노동유인 제고와 노동력의 탈상품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자의 지적이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특정 개인이나 가구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구분되기 힘든 지점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노동요건 부과(work requirements)와 노동유인(work incentives) 제고는 개념상으로 서로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나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노동 또는 구직 노력을 요건으로 한 조건부 급여 지급을 비판하고 개혁하는 것, 그리고 기본소득을 비롯한 조세 및 이전 체계상의 개혁으로 (특히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을 제고하는 것 사이에는 상호 간에 논리적 모순이나 상충지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둘은 충분히 함께 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다양한 효과들을 낳을 수 있다. 여기서 정작 우리가 따져 묻고 주목해야 할 지점은, ‘특정 기본소득 모형’에서의 기본소득이 그 자체로 (그리고/또는 다른 사회복지급여와 결합할 때) 충분하여 어떠한 개인이 유급노동(paid work)을 하고자 하는 선택의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이 경우의 ‘노동유인 제고’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기본소득을 통한 ‘실질적 탈상품화’의 정도, 기회집합(opportunity sets)의 크기는 커짐), 아니면 기본소득이 그 자체로 (그리고/또는 다른 사회복지급여와 결합하더라도) 매우 불충분하여 ‘노동유인 제고’가 실제로는 ‘유급노동에의 강제’와 다를 바 없고 기본소득을 통한 ‘실질적 탈상품화’의 정도, 기회집합의 크기가 형편 없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있다(이건민, 2017: 각주 4).

또한 김병인은 노동경력과 연계된 염두에 둔 Esping-Andersen(1990)의 용법으로 노동력의 ‘탈상품화’ 개념을 특권화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페미니즘 학자들은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화 개념이 과거에 노동력이 일찍이 ‘상품화’되었던 사람들(그중에서도 급여수급 요건을 충족시킨 일부 사람들)에만 국한되고 이전에 ‘상품화’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대부분은 여성)은 배제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예를 들자면, 강희경(2007)을 보라).⁹⁾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가이 스탠딩(2014) 역시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화 개념은 ‘실질적 탈상품화’가 아니라 ‘허구적 탈상품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김병인은 ‘노동력의 탈상품화’ 개념과 관련한 이러한 논의지형을 체계적으로 무시한 채, 오직 에스핑-안데르센의 협소한 탈상품화 개념만을 배타적으로 차용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의 노동경력, 노동능력, 노동의사와도 무관하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노동력의 실질적 탈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근본적으로, 김병인은 비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고용의 ‘비자발성’을 줄이면서(비자발적 실업 및 노동공급의 구조적 과잉 문제 완화-해소; 즉 ‘타율노동’의 축소), 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고용의 ‘자발성’을 고취시키는(노동력의 ‘실질적 탈상품화’ 및 노동유인 제고; 즉 ‘자율노동’의 확장) 기본소득의 양 방향 효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노동정책 개혁을 방기하는가? 과연 기본소득 찬성자들은 불안정 노동의 확산, 노동력 절감 기술의 확대, 임금불평등,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의 심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또는 기술결정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가? 나는 이 또한 김병인의 잘못된 이분법 적용, 거친 논의에서 기인한 오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이 역시 그의 그릇된 ‘딱지붙이기’에 지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이전에도, 이미 수십 년에 걸쳐

9)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에스핑-안데르센(2006) 스스로는 자신의 ‘탈상품화’ 개념이 협소한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인정할 바 있다. “본질적으로 탈상품화 개념은 개인들이 - 혹은 그들이 수급한 복지가 - 이미 상품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100) 하고 있으며, “탈상품화 개념은 임금 관계에 이미 완전히 편입되었거나 돌이킬 수 없이 포섭된 개인들에 대해서만 의미를 갖는다”(103).

제조업에서의 고용없는 성장, 낮은 취업탄력성과 취업(고용)유발계수, 서비스업의 양극화,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의 양산 등이 진행되어 왔다(홍민기, 홍백의, 윤자영, 박제성, 2013).¹⁰⁾ 여기서 4차 산업혁명(만약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사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에서 열거한 추세들 모두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은 사회변화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여부,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대안 제시가 어떻게 다른가에 놓여 있다. 즉 교육·훈련 강화, 기술 개발, 고용 확대 등 이른바 사회투자국가로의 길을 통해 다시금 ‘완전고용’에 이를 수 있고 사회보험, 사회부조는 각각 현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인상, 노동·사회 입법 및 보호조치 강화, 유급노동 중심성의 약화와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위한 기반 조성, 사회적 경제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및 공공인프라 확충, 공유자산의 확장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지이다.

필자는 전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사회구조 변화에 둔감하거나 이를 무시한 채 일종의 ‘낙관적 전망’, 자원론(voluntarism)에 기초하고 있는 견해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길 자체가 ‘생산주의 패러다임’, ‘경제성장 패러다임’, ‘예산제약선 고정 패러다임’에 친화적이며, 극단적으로 갈 경우 노동연계복지, ‘성장이 곧 복지다’, ‘일자리가 곧 복지다’로 회귀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길로 수렴할 위험성까지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완전고용’ 신화(‘완전고용은 언제나 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믿음)와 ‘고용중심적 복지정책’(홍민기, 홍백의, 윤자영, 박제성, 2013) 패러다임이 사회구조 변화에 무관하게 지켜져야만 하고 추구되어야만 하는 일종의 ‘상수’로, ‘필요조건’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후자는 유급노동을 특권화하지 않는다는 점,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자구와 자활의 필수요건인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결단코 장밋빛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점, 기술변화의 혜택을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고루 나누며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요건에서 ‘유급노동 종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더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이다.¹¹⁾

이제 ‘필요의 원리’라는 할당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비판해보자.

Fitzpatrick(1999: 46-47)은 사회보험 급여는 응분의 원리(principle of desert), 사회부조 급여는 필요의 원리(principle of need), 기본소득은 시민권의 원리(principle of citizenship)에 의거한다고 각 급여의 할당원리를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유급노동과의 관련성을 참작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먼저 사회보험은 유급노동을 수행하면서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나중에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의 위험에 처함으로써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 현금·현물 형태의 급여를 받는 구조이다. 노동을 하였고 이를 통해 기여금을 납입하였기 때문에 응분의 원리라고 칭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부조는 스스로 유급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10)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한 것인데, 이러한 현상들과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론)은 분명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가설(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hypothesis; SBTC hypothesis), 단순반복 대체 가설(Routinization hypothesis), 보몰의 질병(Baumol's disease) 등의 가설에 (전혀 또는 일부)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앞에 놓인 당면한 문제들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11) 기본소득을 비록 뜻은 좋지만 실현가능성은 없는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비판·기각하는 사람들은, 실은 ‘추구해야 할 이상향’으로서의 유토피아의 긍정적 측면을 완전히 거세하고 그와 동시에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유토피아의 부정적 측면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실현가능한 유토피아’의 긍정적 발현을 체계적으로 가로막는 실천을 하는 셈이다.

위험에 봉착한 사람들(즉 현재 노동능력이 없거나, 노동능력은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비록 일을 하고 있더라도 궁핍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사회보험과 사회부조 모두 필요가 생겼을 때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회부조의 경우에는 수급에 있어 자신의 기여가 없으므로 ‘응분의 원리’와 구별하여 ‘필요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은 유급노동 수행, 노동능력 및 노동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국적 또는 거주지 조건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지급된다는 점에서 ‘시민권의 원리’라고 일컫는다.

이와 같이 높은 추상수준(level of abstraction)에서는 사회부조, 사회보험, 기본소득은 각각 ‘필요의 원리’, ‘응분의 원리’, ‘시민권의 원리’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 자체는 합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추상수준을 낮추면, 셋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짐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 급여 역시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이에 따라 필요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필요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부조 급여 또한 수급자가 비록 그 크기는 작다 할지라도 현재에도 여러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예전에는 유급노동 수행과 사회보험 기여금 납부 등을 통해 사회에 다방면으로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기여의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¹²⁾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 rights)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사회복지정책)이며, 그러므로 양자 모두 ‘시민권의 원리’를 토대로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물론 둘 모두 시민권을 ‘유급노동’과 결부시킨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어떠한가? 김병인의 주장과 같이 기본소득에서는 ‘필요의 원리’와 ‘응분의 원리’를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인가?

응당 그렇지 않다. 앞서 사회부조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역시 모든 사회 성원에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 즉 GMI에 속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GMI는 정의상(by definition) ‘필요’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사회부조와 기본소득이 구별되는 점은 전자가 일차적으로 시장(노동시장, 자본시장 등)에서 스스로 소득을 벌어들이는 데 실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후자는 유급노동, 노동능력, 노동의사 여부, 개인의 선호와 능력 등과 무관하게 사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빈곤층이 양산되는 현 상황은 (탈)빈곤정책으로서의 사회부조의 적실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노동빈곤의 확산은 사회부조 수급빈곤층과 사회부조 비수급빈곤층 각각의 생활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서로를 반목분열시킬 가능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상당한 경제적·정치적 부담을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현재의 빈곤 사각지대 문제는 기존의 사회부조가 아닌 기본소득이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필요의 원리’를 오늘날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더 잘 관철시킬

12) SBS(2014)는 이 점을 생생히 담아내고 있다.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010101&pgm_mnu_id=14825&pgm_build_id=&contNo=cu0015f0096700&srs_nm=967. (2017년 5월 4일 최종접속).

13) 사회부조의 제도적 특성들에 더하여,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빈곤 문제를 보면서 사회부조 수급빈곤층은 탈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사회부조 수급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강화시킬 확률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부조 비수급빈곤층은 사회부조 수급빈곤층에 대해 이전보다 더 나쁜 인식과 감정을 지닐 가능성, 그리고 증세에 저항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만약 노동빈곤 문제에 대처하여 사회부조의 급여수준을 높이고 급여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사회부조 수급자와 수급액 모두 증가함으로써 사회부조 수급자와 납세자 간 분열과 갈등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자면, 필자는 현재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와 일정 정도의 ‘수급액 인상’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보며, 사회부조를 기본소득으로 (점진적으로 또는 한꺼번에) 대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수 있는 것은 사회부조가 아니라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이어서 ‘응분의 원리’는 어떠한가? 유급노동 종사와 그에 수반한 사회보험 기여금 납부만을 사회적 ‘기여’(contribution)로 그에 따른 급여 지급만을 ‘응분’(desert)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상의 ‘완전고용’ 상태였으며 전일제 정규노동이 일반적이었던 산업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황금기(복지국가 황금기)에는 적합했을지 모른다.¹⁴⁾ 하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만연)과 일하더라도 사회보험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양산)이 즐비한 상황에서 여전히 ‘유급노동’만을 사회적 ‘기여’로, 이에 따른 급여 지급만을 ‘응분’으로 간주하는 의견을 고집하는 것은 ‘자본주의 황금기’라는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그리로 복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불과하다.

‘응분의 원리’를 재구성할 필요는 비단 지금까지 열거한 사회보험제도의 위기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노동생산성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하는 신고전학과 한계생산력설의 부적합성, 불평등에 대한 능력주의(meritocracy) 옹호론의 허구성,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계급적 성격, 계급(계층)편향성과 부패, 금권자본주의적, 세습자본주의적 성격 강화와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 등은 이미 여러 차원에서 지적된 바 있다(뒤메닐, 레비, 2006; 하비, 2007; 피케티, 2014). 굳이 방대한 문헌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금융자본주의의 부패와 폐해, 부채의존 성장의 문제와 취약성,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등은 우리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몸소 겪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응분의 원리’ 재구성 필요에 대한 부정적 계기들을 열거했다면, 긍정적 계기들 역시 존재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 사회적 부, 지식·정보와 집합노동(collective labour)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지식·정보의 생산/소비 경계가 허물어지며, 각 개인의 한계기여(marginal contribution)를 측정하고 이에 보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현재의 상황은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응분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¹⁵⁾ 지식, 정보, 토지 등 여러 가지 부의 원천을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하고 이로부터 얻은 수익을 기본소득과 공공인프라에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는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이며, 또한 정당하다. 오히려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 뿌리 깊은 ‘반공주의’로 인해 모두가 마땅히 공유·향유해야 할 지식, 정보, 토지 등이 사유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대추구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는 반면, 이와 동시에 서민들, 특히 저소득층에게 유급노동을 사회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비효과적,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정당하지도 않다. 우리 모두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 사회적 부의 정당한 상속자이고, 그러므로 각자의 몫(share)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급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고 하는 ‘기본소득의 철학’은 우리 시대의 상황과 더욱 잘 들어맞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기본소득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무수한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기본소득의 철학’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기능성’ 역시 우리 시대와 잘 조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부조는 ‘필요의 원리’, 사회보험은 ‘응분의 원리’, 기본소득은 ‘시민권의 원리’를 토대로 한다고 하는 높은 추상수준에서의 구분선은 추상수준을 낮출 경우에

14)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에도 공/사 성별분업과 생태 문제라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했음은 물론이다. 유급노동과 달리 가사노동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여’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으며, 이는 사회보험의 ‘남성 편향성’ 문제를 낳았다. 또한 생태·환경에 무감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산업생산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기여’라기보다는 오히려 ‘공해’였다.

15) ‘유급노동 중심성’에서 벗어나 일상 하나하나를 음미해보면, 우리들 존재 하나하나가 다종다양한 형태로 공동체·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체감·체험할 수 있다.

는 그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 역시 사회부조와 마찬가지로 필요 개념에 의거한다는 김병인의 주장 하나만은 타당하다. 하지만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은 필요에 입각하지만 기본소득은 필요 개념과는 무관하다는 그의 또 다른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기본소득은 GMI의 하위 범주라는 점에서 정의상 ‘필요’ 개념과 밀접히 관련되며,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필요의 원리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사회정책이 아니다’는 김병인의 주장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의 주장은 ‘유급노동 중심성’, ‘완전고용’, ‘현존 사회보장제도’를 고수한 채 현실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의 기본입장을 반영하고 있을 따름이며, 이러한 견해는 기본소득에 대한 그의 선입견을 형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더 근본적으로는,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사회정책’이나 ‘조세정책’이나의 범주 구별 문제가 아니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은 바로 김병인이 ‘필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이 사각지대(배제), 급여 불충분성 등으로 인해 기능부전 상태에 봉착해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소득이 양 제도를 대체 또는 보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최근 들어 기본소득이 필요와 무관하게 자원의 할당량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획일적 성격’을 가진다는 비판(김종명, 2017: 55; 양재진, 2017: 41; 윤덕룡, 2017: 54)이 광범하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답하고자 한다. 첫째, 대체로 소득 증가에 따라 화폐의 한계효용이 체감(遞減)한다는 점을 헤아린다면, 이러한 비판은 일면적이다. 같은 50만원이라도 저소득층의 체감(體感) 효용, 실질적인 필요-지원과 (초)고소득층의 그것은 극명한 차이가 난다. 저소득층일수록 같은 액수의 기본소득이 더욱 간절하고 소중한 것이다. 아울러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세 부담 측면에서 보자면 기본소득의 ‘획일적 성격’을 지적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 기본소득은 ‘능력(또는 자원의 지배력)에 따라 내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점에서는 현물형태의 사회보험(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와 오히려 유사한 측면이 있다.

둘째, 기본소득, 사회부조 급여, 사회보험 급여 모두 수급자의 특수한 필요에 완벽히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특정 개인/가구의 특수한, 개별적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 대신 기본적, 사회적 필요(basic and social needs)에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사회부조의 필요량을 보여주는 김병인(2016: 87)의 예를 보자. 1인가구의 사회적 필요량이 60만원으로 설정되고, 실제 가구소득이 20만원이라면 해당가구는 40만원의 사회부조 급여를 받게 된다고 제시한다. 그런데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설정된 빈곤선은 그 가구의 ‘실제 필요’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가? 개별가구의 특성들과 욕구에 따라 급여수준이 실제로 조정되는가? 가구소득은 그 가구의 경제력을 정확히 반영하는가? 간주소득, 추정소득, 자산의 소득환산액 책정은 또 어떠한가? 이어서 사회보험의 일종인 실업급여의 필요량을 설명하는 김병인(2016: 86)의 예를 살펴보자. 실직 전 최종소득이 300만원이고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80%라면 개인이 받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240만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80%’라는 소득대체율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 발생 시 실업당사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수치’임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 제각기 다른 개인들의 개별적, 특수적 필요는 ‘80%’라는 단일수치로 과연 대처가능한가? 급여상한액 설정 문제는 어떠한가? 노동경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자발적 퇴직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필요’가 없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실직 전에 높은 노동소득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직 후 더 큰 ‘필요’를 느끼는가?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의 무용성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부조 및 사회보험 급여 역시 특정 개인/가구의 개별적, 특수적 필요에 적확

하게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본적, 사회적 필요에, 그것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도(on average) 불충분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과 구분되는 지점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정책 연구자들은 기존의 사회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이 넓은 의미에서 ‘필요의 원리’에 입각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①노동연령층(노동가능인구)에게도 지급되기 때문에(현물형태의 사회보험 급여를 생각해보라), ②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다양한 사회수당을 참작해보라), ③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사회부조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화폐의 한계효용체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납세액을 감안해보라), 또는 ④조세와의 긴밀한 결합 때문에(일반조세 내지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사회복지급여와 마찬가지로, 조세배당결합은 오히려 재정환상을 제거하며 다른 급여들과의 대체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관계에 놓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고려해보라) 사회보장제도, 소득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는 논변은 극히 취약하며 부적절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3. 보편적 사회수당을 (부분)기본소득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가?: 청년기본소득이 질문을 바로잡고, 우리의 실천이 바뀐 질문에 응답한다.

서구 복지국가, 특히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논자들은 아동수당, ‘전면화된 기초연금’ 등 특정 인구범주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은 기본적인 가치, 원칙, 철학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긋는다(김병인, 2016; 김영순, 2017a; 2017b; 김종명, 2017; 이상이; 2017). 따라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편적 사회수당’을 ‘(부분)기본소득’이라고 칭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보편적 사회수당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회적 맥락은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복지국가 황금기)에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사회수당이 프로그램화되었던 그것과는 상이하다(금민, 2017).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제안된 주요 배경인 한국 청년들이 마주한 엄혹한 현실, 즉 비자발적·구조적 실업, 노동빈곤, 불안정·비정규 청년노동시장(이승운, 이정아, 백승호, 2016; 이승운,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은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사회수당이 등장했던 사회경제적 맥락과 우리의 현 상황이 현격하게 다름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서 사민주의 복지국가 또는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는 논자들의 이에 대한 입장은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은 ‘필요’의 논리에 토대한 것이므로 (부분)기본소득으로 명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뿐,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 관련 현금급여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이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들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적어도 ‘보편적’ 사회수당은 아니며, 성남시 ‘청년배당’과 ‘청년기본소득’ 제안이 오히려 ‘형태적으로는’ 보편적 사회수당에 가깝다는 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¹⁶⁾ 이는 지금까지 노동능력이 충분하며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졌던 ‘청년’층이 최근 들어 복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계층으로 주목받는다라는 시대 상황에 주목하지 않거나, 이를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도 아니면 지금까지의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복지를 긴밀히 연계시키는 전통적인 해법’으로 청년정책을 입안·실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를 견

16) 이 점에서는 김병인이 오히려 솔직하다 할 것이다.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이 급여의 자격조건이며, 이에 따라 근로연령대 인구(working age)를 배제한다(2016: 각주 1).”

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는 아동, 노인과 더불어 청년(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이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대상으로 제안되고 있는 사실 자체가 노동가능인구 구별과 완전고용 추구의 적실성, 특별한 필요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취약계층 내지 고위험집단의 전통적인 식별/구분 자체가 약해지거나 무용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청년층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갖가지 통계지표들(공식 및 실질 실업률, NEET 비율, 주거빈곤율, 고용률, 비정규·불안정 노동의 수와 비율, 사회보험 가입률, 소득·소비·부채 추이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 등등)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¹⁷⁾ ‘N포세대’, ‘이생망’, ‘부들부들’(또는 ‘ㄸㄸㄸㄸ’), ‘흙수저’, ‘헬조선’ 등의 갖가지 신조어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한국 청년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청년기본소득 제안(을 등장시킨 배경)은 ‘보편적 사회수당을 (부분)기본소득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부적절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헤아린다면, 보편적 사회수당이라고 부르느냐, (부분)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느냐, 아니면 둘 중 무엇으로 부르든 무방한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결국 향후 한국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상이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대한 각자의 지향과 관점에서의 차이를 반영할 뿐이다.¹⁸⁾ 그러므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인구집단별 사회수당(형태의 기본소득)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은 불가능한가 아니면 불가피한가?’로,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인구집단별 사회수당(형태의 기본소득)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가로막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가?’로 말이다.

결국 인구집단별 사회수당(형태의 기본소득)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¹⁹⁾ 그러한 사회가 오지 않도록 그 스스로가 적극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인구집단별 사회수당(형태의 기본소득)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의 이행(‘보편성’의 상승), 그리고 지급수준이 불충분한 부분기본소득에서 생계수준으로 지급되는 완전기본소득으로의 이행(‘충분성’의 상승)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로의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며 사회적으로도 유용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비록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생계수준 기본소득과 연동된 포괄적인 정책패키지가 실현된 사회에서는 유급노동으로부터, 가부장제로부터, 관료제로부터, 소득·자산·기회·시간 불평등으로부터, 불균등·불합리한 권력관계로부터, 성장과 생산의 압박·강박·중독으로부터, 생태·기후 위기로부터, 실질적 참여와 민주주의의 위기로부터 상당 부분 해방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결국 서로 경합하는 견해·아이디어·정책이 서로 맞부딪힐 때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의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하의 실천적합성(현실부합성)에 달려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위와 같이 우문(愚問)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할당원리, 즉 ‘필요의 원리’와 ‘응분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재구성할 것을, 더 나

17) 이에 대해서는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2016),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2017) 등을 참조하라.

18) 첫 번째 입장이 이른바 ‘진보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견해라 한다면, 두 번째 시각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기본입장이라 볼 수 있고, 세 번째 입장은 미래는 열어둔 채 눈앞의 공통목표까지는 일단 연대해서 함께 가자는 오건호(2017)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19) 물론 그것이 시공간적 조건을 부과한 것인지, 시공간적 맥락과 관계없이 항상 그러하다고 보는 것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이다. 전자를 조건부/상황적 유보 내지 반대라고 한다면, 후자는 무조건적/보편적 반대라고 일컬을 수 있다. 후자는 전혀 물질론적이지도, 변증법적이지도, 사회비판적이지도 않은 ‘도그마적 견해’에 불과하다. 물론 전자에게는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아가 ‘진정한’ ‘시민권의 원리’에 의거한 기본소득을 통하여 ‘사회적 시민권’을 재구성·급진화할 것을 우리 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두 가지 대표 쟁점, 즉 ‘기본소득 대상으로서 왜 청년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는 각각 그 자체로 ‘필요’의 논리를 내포한다.²⁰⁾ 그리고 더 나아가 권리와 신뢰를 ‘먼저’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체·사회를 향한 ‘자발적인’ 기여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권리 부여 이전에 의무 이행을 우선 요구하였던 과거의 낡은 ‘호혜성(상호성)의 원리’, ‘응분(기여)의 원리’를 뛰어넘는 논리를 내장한다. 결국 지금까지 노동능력이 충분하며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졌던 ‘청년’층이 이제 복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한 ‘필요의 원리’와 ‘응분의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구성을 우리 사회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진정한’ ‘시민권의 원리’에 근거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한 ‘사회적 시민권’의 재구성과 급진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부분기본소득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 즉 ‘보편성 상승’으로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편적 사회수당/부분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 집단은 이제 아동, 노인 등 전통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자본주의 시대에서 ‘노동가능인구’로 간주되었던 청년을 포괄할 만큼 ‘보편적’임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의 단박 도약이 아니라 부분기본소득의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의 점진적 확장이라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부분기본소득의 ‘보편성’ 확대 전략의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청년기본소득’이 되리라고 예상된다. 여전히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산업자본주의와 복지국가 황금기의 신화와 논리’를 확실히 깨고 거기서 벗어나는 의미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이 현실에서 실현되느냐의 여부는 특별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소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단지 단순한 아이디어와 실험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실제 현실로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중들을 설득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본소득에 매력을 갖고 기본소득을 욕망하게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 모임, 토론, 정책화, 조직화, 법제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건민, 2016). 우리가 ‘지금’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끌 중요한 시발점이자 핵심적인 기폭제·정축매인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귀중한 실천인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운동’과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 운동’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²¹⁾

20)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2016)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기존 청년정책의 부적합성·불충분성 등을 들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대상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저자들의 견해에 동의한다. 다만 청년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액 산출방법에 있어서는 저자들이 제시한 것 이외에 다른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1)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운동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녹색전환연구소, 서울녹색당 등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 운동은 인천기본소득 공동행동, 알바노조 인천지부, 노동당 인천시당 등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희경(2007). “탈상품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족과 문화』 19(1). 1-27.
- 금민(2016). “해방적 기본소득과 탈자본주의 이행”.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자료집』. 317-333.
- 금민(2017). “기본소득은 불평등 시정하는 현실적 대안”. <[포커스]경제적 불평등 해결방안 기본소득이 해법인가>. <<주간경향>> 1214. 2월 21일자.
- 김병인(2016).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 『사회복지정책』 43(4). 79-107.
- 김영순(2017a). “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하나의 비판적 검토”. 『월간 복지동향』 221. 5-13.
- 김영순(2017b). “청년 노동조합운동의 복지외제와 복지국가 전망: 청년유니온과 알바노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1(1). 233-259.
- 김은표(2016).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1148. 국회입법조사처.
- 김종명(2017). “정의당식 기본소득정책구상에 대한 비판”. 『기본소득제 구상과 대선의제 채택 가능성: 당내외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토론회(일시: 2월 1일(수) 16시, 장소: 정의당 중앙당 회의실). 53-69.
- 뒤메닐, 제라르(Gérard Duménil),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2006).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이강국, 장시복 역. 필맥.
- 스탠딩, 가이(Guy Standing)(2014).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역. 박종철 출판사.
- 양재진(2017).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 토론 자료집』.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일시: 3월 29일(수) 14시, 장소: 화우연수원). 34-46.
- 에스핑-안데르센, 요스타(2006). 『복지체제의 위기와 대응: 포스트 산업경제의 사회적 토대』. 박시중 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오건호(2017). “[정동칼럼]보편복지와 기본소득, 함께 가자”. <<경향신문>>. 2월 21일자.
- 윤덕룡(2017). “기본소득 도입: 주요 이슈와 고려사항”.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 자료집』. 화우공익재단 제3회 공익세미나(일시: 3월 29일(수) 14시, 장소: 화우연수원). 52-56.
- 이건민(2016). “기본소득과 실험: 실험에서 대안으로 상승하기 위하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2-82.
- 이건민(2017). “기본소득 정책 모의실험 연구의 성과와 한계”. 『비판사회정책』 54. 522-530.
- 이상이(2017).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다”. <[포커스]경제적 불평등 해결방안 기본소득이 해법인가>. <<주간경향>> 1214. 2월 21일자.
-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 플라니, 칼(Karl Polanyi)(2009). 『거대한 전환』. 홍기빈 역. 길.
- 피케티, 토마(Thomas Piketty)(2014). 『21세기 자본』. 장경덕 외 역. 글항아리.

- 하비, 데이비드(David Harvey)(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최병두 역. 한울아카데미.
- 홍민기, 홍백의, 윤자영, 박제성(2013).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노동연구원.
- Esping-Andersen, G.(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itzpatrick, T.(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Macmillan Press.
- Van der Veen, R. J. and P. Van Parijs(1986).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Theory and Society* 15(5). 635-655.
- Van Parijs, P.(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SBS(2014). <<그것이 알고싶다>> 967회 "위험한 가족, 그들에겐 아무도 없었다"(12월 20일).
http://program.sbs.co.kr/builder/endPage.do?pgm_id=00000010101&pgm_mnu_id=14825&pgm_build_id=&contNo=cu0015f0096700&srs_nm=967. (2017년 5월 4일 최종접속).